

2006. 3. 17(금) 10:00

제12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5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안상룡

【 목 차 】

1.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2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거창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4.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5.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6.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의안번호 제2006-11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 3. 10
- 나. 발 의 자 : 신 현 기 의원 외 8명
- 다. 회부일자 : 2006. 3. 10

2. 제안이유

-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인 노령·장애·한부모 가정 등이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 병원·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결손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저소득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결손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등으로 함(안 제3조).
-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결손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등으로 함(안 제5조).
-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사실상 어려운 세대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저소득 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동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가구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으로 월보험료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결손가정 및 장애인 세대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이미 동 조례안은 도내 합천군을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정된다면 군내 상대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에 예산조달 등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측의 자료에 의하면 688세대로서 연간 소요 예산액은 31,056천원 정도(아래 현황 참고) 이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전액 군비로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시 확보하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저소득·취약계층 월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현황

(2006. 2월말 현재)

구분	세대수	월 보험료	연간보험료	비고
계	688	2,587,970	31,055,640	
노인세대 (65세 이상)	638	2,366,020	28,392,240	
결손가정 (모·부자세대)	2	13,790	165,480	
장애인세대	48	208,160	2,497,920	

- ◆ 발췌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 ◆ 건강보험료 지원시 소요예산 산출기초
 - 월 2,588천원 × 12월 = 31,056천원 정도
 - 지원대상인원은 매월 및 해마다 증가 변동이 예상됨.

<의안번호 제2006-4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3.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3. 9

2. 개정이유

- 1998년 조직개편 일환으로 폐지된 구 남하보건지소를 환원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보건지소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보건지소 신설 : 남하면 보건지소
- 나. 명칭 및 주소 변경
 - 가북면 내촌보건진료소 ⇒ 용암 보건진료소
 - 가북면 몽석리 197-3 ⇒ 가북면 용암리 1185-1
 - 고향보건진료소
 - 마리면 고향리 1130-5 ⇒ 마리면 고향리 1113
 - 율리보건진료소
 - 마리면 율리 176-1 ⇒ 마리면 율리 161-5
- 다. 별표 개정 사항 ⇒ 별표 1 참조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직속기관)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98년 조직개편 일환으로 폐지된 구 남하보건지소를 남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된 바람직하고 신속한 조치의 결과로서 환원하는 사항과 보건진료소 3곳(내촌, 고향, 울리)의 이전신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설치)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보건지소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때에는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06. 1. 4~1. 24)하고 있었으며, 다른 자취되는 사항은 없었지만
- 남하면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향후 근무인원 계획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원없이 현재의 보건소 정·현원(73명)으로 자체조정 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의안번호 제2006-5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3.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3. 9

2.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9270호, 2006. 1. 12)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여비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함
 -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의 일비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 숙박비 단가 : 제3호(4-5급)의 25,000원과 제4호(6급 이하)의 22,000원 ⇒ 30,000원으로 인상됨
 - 식비의 단가 : 제3호(4-5급)의 18,000원과 제4호(6급 이하)의 15,000원 ⇒ 20,000원으로 인상됨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안 부칙)

4. 참고사항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대통령령 제19270호, 2006. 1. 12)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공포(제19270호, 2006. 1. 12)됨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서 근무지내 출장여비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 : 1만원 → 2만원
 -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 : 5천원 → 1만원
 - 관용차량 이용하는 경우 : △5천원 → △1만원
- 그 동안 현실화 되지 못한 근무지내 출장여비에 대하여 현실화 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사항이 없었음.

<의안번호 제2006-6호>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3.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3. 9

2. 개정이유

- 읍·면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제7조)
 - 읍·면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

- ▶ “읍·면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
-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안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안 제17조, 18조, 20조)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개정(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2711호)
- 입법예고(2006. 1. 1 ~ 1. 24)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그 동안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현실과 불부합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읍·면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또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입법예고(2006. 1. 4 ~ 1. 24)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센 터 명	개소일	위 치	위원인원	비고
총 계		7 개 소		
웅양면 주민자치센터	'03. 7.16	웅양면 노현리	23명	
고제면 주민자치센터	'04. 6.23	고제면 농산리	25명	
북상면 주민자치센터	'04.11.17	북상면 갈계리	25명	
마리면 주민자치센터	'01. 2.16	마리면 말흘리	26명	
가조면 주민자치센터	'04.11.30	가조면 마상리	22명	
남상면 주민자치센터	'05.12.20	남상면 무촌리	26명	
남하면 주민자치센터	'05.12. 5	남하면 무릉리	22명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 제2항, 제3항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06-9호>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3.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3. 9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규정에 의한 주민조례의 제정절차에 따라 우리군에 접수·수리된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여 21C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여 군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안 제1조).
-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학교급식 식품비의 예산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지원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 사용

-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학교급식관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공급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규정에 의한 주민조례의 제정절차에 따라 '05년 10월 4일 청구대표자 김상택(38세,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1832)으로부터 청구접수된 사안으로 21C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도모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먼저,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압축한다면
 - 첫째,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여부
 - 둘째, 주민조례 제정청구에 대한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 극복방안
 - 셋째,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재정적인 여력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그래서 우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여부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관계법 저촉사항을 법리에 대한 학리해석과 관계부처의 정부유권해석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 최근에 학생 건강증진 등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2호에 해당됨)로 해석할 수 있으며
 - 「학교급식법」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학교급식법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의 3분의 1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로 한정하여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결과 행자부에서는 학교급식법의 유권해석기관인 교육부의 판단사항이라고 회신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식품비 지원은 시행령 제7조 5항에서 초·중등학교 급별에 관계없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는 회신이 있었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이 일반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초·중등학교 급식지원이 법령상 반드시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음.

- 다음은 주민조례 제정청구에 대한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에 대하여 주민 청구 조례는 반드시 제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판단이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므로
 - 이에 대한 고문변호사와 지방자치연구소장(서우선 박사)의 지문결과 기존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제정이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청구 조례라는 이유로 반드시 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재정적인 여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으므로
 - 이에 대한 지원 예상규모와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조례제정 후 학부모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때 주민들의 불멘소리를 감당할 대안이 필요한 것 같음.
- 그리고 당초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이 요구되었는데 제1조(목적)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게 된 배경과 제3조(예산지원 등)에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6.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및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및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급식경비부담)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근공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②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 ⑨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8조 (경비부담) ①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30>

② 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7조 (급식경비부담)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개정 1994.6.17, 1995.4.6, 1997.4.29>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2.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29>

1. 식품비
2.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제1항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3.20, 1984.2.25, 1990.2.12, 1990.12.22, 1991.2.1, 1994.6.17, 1996.2.22, 1997.4.29>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도서벽지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제2항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중 도서벽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의 3분의1과 제2항제2호의 경비
3. 교육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④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4.29>

1.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의 3분의 1
 3. 교육감이 위탁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8조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제8조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개정 2000.12.27>)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의안번호 제2006-12호>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 3. 15
- 나. 제출자 : 신주범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 2006. 3. 15

2. 제안이유

- 작년에 우리 군에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11월 4,500여명주민의 서명을 받아 무상급식 원칙의 확인,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안을 집행부에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청구한 거창군 지역주민과 운동본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도시로서의 거창군의 위상과 면모를 드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을 개정
 -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 ⇒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여 군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안 제1조).

-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식품비’, ‘식재료’, ‘학교급식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학교급식 식품비의 예산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학교급식관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거창군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14개 단체가 참여를 하여 거창군 운동본부를 출범 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가 집행부를 거쳐 의회에 의안으로 접수된 사실에 대하여 조례청구 주요내용이 기존조례와 대다수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 기존의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들이 원하는 근본취지를 담고 또한 교육도시 거창군의 위상과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기존 유사한 조례가 있음에도 주민청구 조례라는 이유로 반드시 제정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고,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발빠른 행보로 제반 반영하는 모습은 고객만족 행정과 미래지향적 업무수행으로 높이 평가되며,
- ※ 관계법령 저촉사항이나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항과 동일하여 대신함.